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9일, 조정태의원 등 13인 제출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의원)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성완)

가. 건축물 등 분양·임대 근거 신설

개정안은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서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처분 대상을 조성토지에 건축물·공작물 등을 포함한 개념인 “조성토지등”으로 확대하고(안 제17조제2항제8호 및 제38조), 현행법 제27조의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을 ‘조성토지등을’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개정안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처분 근거가 마련될 경우, 기존의 토지 조성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토지와 상부시설(건축물 등)을 연계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나. 준공검사 시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강화

개정안을 통하여 준공검사 시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의 이견이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속한 이관과 개방이 가능해져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의 위원회 중복 설치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통합협의체’는 그 성격과 기능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같은 법 제7조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위원회와 체계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중앙심의회 심의사항 및 구성을 고려할 때, 중앙심의회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통합협의체와 유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심의회 또는 시·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협의체 대신 중앙심의회, 지방심의회, 공청회 등 현행법상의 위원회 또는 절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